



구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1886호 |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고 시

- 미추홀구 고시 제2026-125호 「송의역2단지 지역주택조합」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2
- 미추홀구 고시 제2026-128호 통일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추천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3

공 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73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79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삼덕진주아파트 소 규모재건축정비사업) 6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80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대호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 7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83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9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85호 차령초과 말소 예고통지 취소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0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88호 도화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5차)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 11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91호 운행정지명령위반(운행)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12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93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13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98호 옥외광고물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16

회 람

| 발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 편집: 미디어홍보실

고 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 - 125호

『숭의역2단지 지역주택조합』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50-1번지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제1항,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사업명칭: 숭의역2단지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사업
2. 사업주체: 숭의역2단지 지역주택조합[대표: 홍자윤/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신포로 8, 502호]
(주)유림이앤씨[대표: 손형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7, 지하101호]
3. 사업시행위치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50-1번지 일원
 - 나. 대지면적 : 6,984.3㎡
 - 다. 규 모 : 지하 5층~지상 40층, 주5개동 및 부속2개동
공동주택(324세대), 오피스텔(108호),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5. 주요변경 내용
 - 가스 정압시설 설치
 - 204동 정화조 환기구 위치 이동
 - 형별성능 관계내역 변경 및 녹색건축 예비인증사항 반영 등
 - 단위세대 가구표기 변경 및 마감재료 변경, 창호도 변경, 소방창 변경 등
 - 입면도 변경 및 사용검사 예정일 변경(2027. 8. 5. → 2030. 5. 11.) 등
6. 사업계획(변경)승인일: 2026. 8. 18.
7. 사업시행기간 : 사업계획승인일 ~ 2030. 5. 11.
8. 의제처리사항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128호

「통일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추천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461-4번지 일원 통일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추천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시장개설자,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등 이해관계자는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1. 공람기간: 2026. 8. 20. ~ 2026. 9. 21.(33일간)
2. 공람장소: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880-4383) 및 통일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876-0303)
3. 공람내용
 - 가. 사업의 명칭: 통일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 나. 추진주체: 통일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김광식)
 - 다. 사업추진계획 개요
 - 1) 사업예정구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461-4번지 일원
 - 2) 건축연면적: 17,641.77㎡(지하 2층, 지상 19층)
 - 3) 용도: 판매시설,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 4) 소요예산: 33,679백만 원
 - 라. 사업추진이유: 건축물 노후화 및 지역상권 침체로 인하여 시장정비사업으로 개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4. 의견제출: 미추홀구 경제지원과(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5. 관련도서 및 세부사항: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공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373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미 추 홀 구 청 장



1. 공고내용: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8. 19. ~ 2026. 9. 4. (16일간)
3. 법적근거: 도로법 제7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고 및 게시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대상자 및 내용

성 명	주 소	위반 내용 및 장소	부과금액	납부기한
김○례	인천광역시 동구 어촌로 1*, 10*동 *01호 (만석동)	노점 도로무단점용(3㎡) (미추홀구 송의동 46-23)	300,000원	2026.8.31.

6. 송달 내용

가. 과태료는 고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도로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지속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조치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는 납부기한이 경과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고,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증가산금이 추가되며(최대 60개월까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 귀하의 모든소유재산이 압류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 032-880-497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379호

삼덕진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삼덕진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내용

1. 명 칭: 삼덕진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 시 행 자: 삼덕진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3. 사업개요
 -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2-34번지 일원
 - 나. 구역면적: 4,253.20m²
 - 다. 건축규모: 3개동 (지하2층~지상19층, 공동주택 1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라. 건축면적: 1,241.08m² (건폐율: 29.18%)
 - 마. 연 면 적: 17,242.79m² (용적률: 249.966%)
 - 바.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
 - 사.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2. 7. 27.
4. 주요변경내용: 건축물 평면 변경 등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 공람개요

1.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관계 서류의 사본
2. 공람대상: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3. 공람기간: 2026. 8. 24. ~ 2026. 9. 7.(14일간, 토.일.공휴일 포함)
4. 공람장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032-880-448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380호

대호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송의동 170-12번지 일원 대호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관계 서류의 공람)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내용

가. 사업명칭: 대호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시 행 자: 대호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문현숙)

다. 신청내용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170-12번지 일원
- 구역면적: 4,212.3㎡
- 건축면적: 3,078.4998㎡(건폐율: 73.08%)
- 연 면 적: 49,060.52㎡(용적률: 776.91%)
- 규 모: 2개동/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2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2. 공람개요

- 가.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계서류의 사본
- 나. 공람대상: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 다. 공람기간: 2026. 8. 24. ~ 2026. 9. 7. (14일간 , 토·일·공휴일 포함)
- 라.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032-880-4484)
대호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사무실
(☎ 032-891-1113)
- 마. 참고사항: 공람중인 계획(안)은 행정절차 이행,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결과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될 수 있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83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신고), 제84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0. ~ 9. 4.
3. 공고대상: 총 2건

연번	차량번호	납부자명	주소	반송사유
1	33무37**	(주)지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08, ***	폐문부재등
2	854서35**	홍*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념이길 130, ***	폐문부재등

4. 내 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5. 유의사항

- 과태료 고지 후 체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씩 증가산금(최고 75%: 60개월)이 추가되며, 독촉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차량)이 압류됩니다.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은 그 사항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며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880-4548)

2026년 8월 20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거 접수된 차령초과 말소 신청 차량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 권리행사로 예고통지 취소 알림 등기 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제목: 차령초과 말소 예고통지 취소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1. ~ 2026. 9. 7.
3. 예고통지 취소경정일: 2026. 8. 3.
4. 공고대상

차량번호	소유자	송달지	송달불가사유
19두8158	박*현	충청북도 청주시 **	폐문부재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880-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1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88호

도화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5차)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1-67(2011. 10. 24.)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1-69(2021. 5. 10.)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화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1. 사 업 명 : 도화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5차)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53-28 일원
3. 사업 시행자 : 도화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8. 26. ~ 2026. 9. 9. (15일간)
6. 열람장소 및 방법 :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방문 또는 전화(☎032-880-4757)
7. 열람서류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 관계서류는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391호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가 계속 운행되고 있어 같은 법 제13조제3항3호 및 제4항에 따라 직권말소등록을 하고자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위한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명칭 :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1. ~ 9. 4일(15일간)
3. 말소등록예정일 : 2026. 9. 7일 이후
4. 공시송달대상차량

말소대상 자동차			이해관계 내 용	이 해 관계인	송달지	반 송 사 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23누7337	재규어 XF 3.0SC	박*환	을부번호:5014-2019-18309 0 설정일자:2019.3.16.	**캐피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여의도동)	수취인 불명

5. 공시송달 내용 : 위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은 말소예정일 이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고, 진행 중인 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일 이후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032-880-45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93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05호(2026. 8. 20.)와 관련입니다.

2026년 8월 21일

미추홀구청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km ²)	비 고
합 계		7,327.09	
서울특별시 (25개 구)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	605.21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기도 (23개 시·군)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6,243.97	
인천광역시* (8개 구 및 제물포구 일부 동)	계양, 남동, 미추홀, 부평, 연수, 서해, 검단, 영종, 제물포(중앙동1가, 중앙동2가, 중앙동3가, 중앙동4가, 해안동1가, 해안동2가, 해안동3가, 해안동4가, 관동1가, 관동2가, 관동3가, 향동1가, 향동2가, 향동3가, 향동4가, 향동5가, 향동6가, 향동7가, 송학동1가, 송학동2가, 송학동3가, 사동, 신생동, 신포동, 답동, 신흥동1가, 신흥동2가, 신흥동3가, 선화동, 도원동, 유동, 율목동, 내동, 경동, 용동, 인현동, 전동, 북성동1가, 북성동2가, 북성동3가, 선린동, 송월동1가, 송월동2가, 송월동3가)	477.91	

* 재지정 구역은 동일하나 '26.7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기재함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허가대상자 :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허가대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 초과
	임 야	1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 초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면적 10% ~ 300% 범위 지정 가능

5.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 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설정)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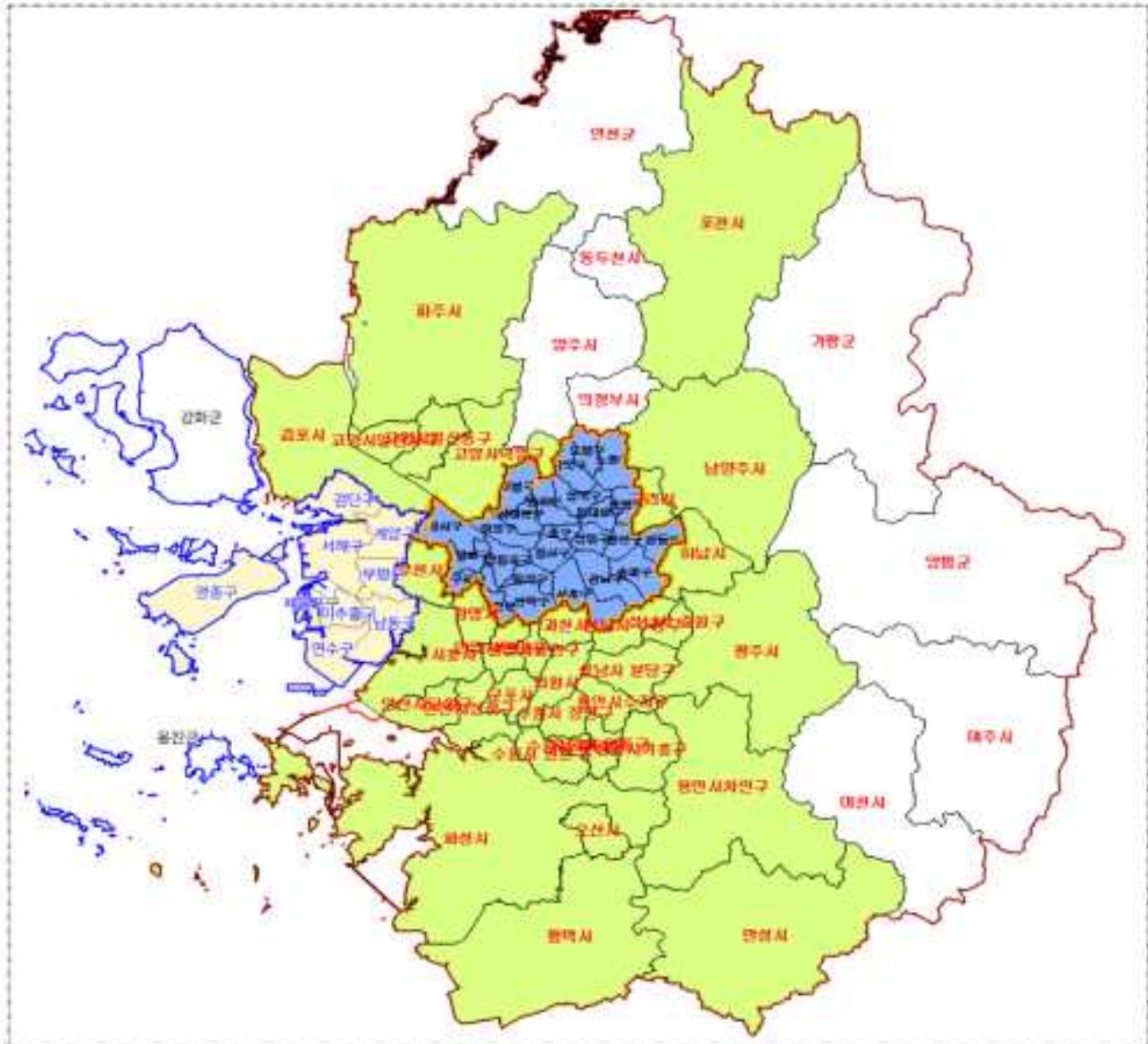
6. 열람기간 및 장소

열람기간	열람장소
2026년 8월 21일 ~ 2026년 9월 5일(15일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

※ 미추홀구청 누리집 참조

[붙임] 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6-1398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8. 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제 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9. (17일간)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동법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 위반사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게시
-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및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시송달 대상자

처분종류	성명	송달주소	과태료	반송사유	등기번호	위반내용
사전통지	신*식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7* 1* (가좌동)	금280,000원	폐문부재	14417-0603 -546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7.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가산금 규정에 따라 가산금이 가산되며, 체납된 과태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8.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 불법 유동광고물 담당(032-880-4986)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